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3.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3. 18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증원되는 인력 5명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 행정자치부의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정원 불부합 현원에 대하여 인원의 조정 및 해소기간의 연장 등 관련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2,498명에서 2,503명으로 조정 (증원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8명 ⇒ 1,443명 (증원 5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960명 (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6명 (변동없음)
- 정원조례 부칙개정 : 초과현원 유예기간 연장 (증평 6급 5명)
 - 유예기간 : 2003. 2. 28 → 2003. 8. 31 (6개월 연장)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204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였으나,

도의 증원요구와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결과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청의 지도기능 보강 2명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보강 3명 등 5명을 증원하고,

중평출장소의 초과 현원(6급 5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2003. 2. 28 ⇒ 2003. 8.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정원 불 부합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초과현원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증원되는 인력 5명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 행정자치부의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정원 불부합 현원에 대하여 인원의 조정 및 해소기간의 연장 등 관련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2,498명에서 2,503명으로 조정 (증원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8명 ⇒ 1,443명 (증원 5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960명 (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6명 (변동없음)
- 정원조례 부칙 개정 : 초과현원 유예기간연장(증명 6급 5명)
 - 유예기간 : 2003. 2. 28 → 2003. 8. 31 (6개월연장)

□ 의안전문 : 별 첨

□ 친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498명”을 “2,503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438명”을 “1,443명”으로 한다.

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중 “현원 8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5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498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8명</u></p> <p>2. ~ 4. (생략)</p>	<p>제2조 (정원의 총수).....</p> <p>..... <u>2503명</u></p> <p>.....</p> <p>1. : <u>1443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p>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p> <p>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p> <p>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u>8명</u>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4조 (생략)</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u>현원</u></p> <p><u>5명</u>은 2003년 8월 31일까지</p> <p>.....</p> <p>제4조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④ (생략)